하대-옥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5호(2020.11.10.)와 제2025-415호(2025.07.25.) 및 제2026-429호(2026.08.11.)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하대-옥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하대-옥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1,966㎡)	실시계획고시일 ~2029.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번(분할 전)					
토지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3필지)					
	593-5	593-2	584-2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8필지)					
	278-28	278-29	278-30	287-18	287-33	287-34
	287-35	287-51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http://lh.or.kr → 사업소개 → 도시조성사업 → 손실보상 → 보상공고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11.04(수) ~ 2026.11.18(수) 10:00~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팀** : ☎053)603-2642,265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보상팀(8층)

○ **경상북도 경산시 도로철도과** : ☎053)810-6103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경산시청)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열람 불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팀 또는 경산시청 도로철도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lh.or.kr)에서 출력 가능

4. 보상시기 : 2027. 2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상황 및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 지 인	• 토지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단,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이하 및 양도소득세 납부예정금액 현금보상 •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채권보상 시행
공 통 사 항	•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채권의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 시 재안내 예정입니다.

※ 채권보상 시 양도소득세 납부예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계산내역을 제출 해야합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 사업인정고시일(2026.08.11.) 1년 전부터 아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한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2026.08.11.)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6.11.18.)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 보상담당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조성공사 착공전 동 사업지구내에 모셔진 분묘의 이장이 불가피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가 있으신 분은 우리공사로 연고자임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팀[☎053-603-2642,26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